관련근거 : 2020-3차 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

(2017학년도) 의료신소재학과 교육과정 일부 개정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학과 내규 1. 학칙 제41조(졸업과 학위), 동 시행세칙 제74조의 2(졸업논문 등)에 의거 졸업작품을 제출,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. 2. 졸업 작품의 제출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 가. 학과에서 제시하는 설계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	**학과 내규** 1. (현행과 같음) 2. 졸업작품의 제출 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 가. 학과에서 제시하는 설계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**(단, 편입생은 제외)**